

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 (안) 심사보고서

2000. 10. 7.
총무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년 9월 30일 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0년 10월 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7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(2000. 10. 7.)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감사담당관 김 재 형

가. 제안이유

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하게 조정·해결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이 개별법에 근거하여 각 부서에서 구성·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하여 최근 수년간 운영실적이 없고, 특히 구정업무 민원사항의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원1회방문처리 추진계획업무와 중복되어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더 이상 본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 관 수)

○ 동건은 마포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하게 조정·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'89년 6월 8일 조례 제86호로 제정되어 4차에 걸쳐 개정된 동조례의 기능이 그 동안 각 부서에서 개별법에 근거하여 구성·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

원회의 기능과 유사하고 최근 수년간 운영실적도 없으며 또한 민원사무처리예관한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원1회방문처리 추진계획업무와도 중복되어 더 이상 동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 안 의 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(안)

의 안	
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0. 9. 26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폐지이유

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하게 조정·해결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이 개별법에 근거하여 각 부서에서 구성·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하여 최근 수년간 운영실적이 없고, 특히 구정업무 민원사항의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원1회방문처리 추진계획업무와 중복되어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더 이상 본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 골자

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함.

3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나. 협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(2000. 9. 5 ~ 9. 25)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(2)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(안) 1부.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